

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

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『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』에 참여할 초기창업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4년 1월 30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 (SCI)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.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(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)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)
- * K-Startup 누리집 - 고객센터 - 온라인매뉴얼 - 일반매뉴얼 - K-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

1

사업개요

- 사업목적** :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
- 지원대상** :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
* 신청자격은 동 공고 '2. 신청자격 및 요건' 참조
- 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(최대 1억원, 평균 0.7억원), 창업프로그램 등

| 사업화 자금 | + | 창업프로그램*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제품 제작, 마케팅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| | 시장진입, 초기투자유치, 실증검증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 |

*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'[별첨3] '주관기관 소개자료' 참고

- 협약기간** :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('24. 4월 ~ '25. 1월 예정)
- 선정규모** : 590개사 내외

*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·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2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,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

< 신청 자격 세부 조건 >

▶ 신청가능 업력 : 2021년 1월 30일 ~ 2024년 1월 30일

- **개인사업자**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**법인사업자**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
 - * 개인·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(개인·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(**붙임1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**)
 - 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-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서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

□ 신청 제외 대상 (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)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 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(**붙임 2**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
- ④ **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[붙임 3]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**
- ⑤ **2024년 중소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**
 * 단,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 ※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「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'사업화' 및 '글로벌'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([붙임4] 참조)
- ⑥ **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**
- ⑦ **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**
- ⑧ **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(기업)**
 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- ⑨ **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**
- ⑩ **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**
- ⑪ **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**
- ⑫ **기타 중소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**

□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 *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(현금)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-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고,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,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
 -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 의무 미이행 시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여

3

지원내용

협약기간 :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('24. 4월 ~ '25. 1월 예정)

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

| 구 분 | 지원 세부 내용 |
|-----------|--|
| 사업화 자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제품 제작, 지적권 취득, 사업모델 (BM)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(평균 0.7억원) 지원 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(정부지원사업비) 차등 지원 ** 사업화 자금 (정부지원사업비)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|

• **총사업비 = 정부지원사업비 70% 이하 + 자기부담사업비* 30% 이상**

* 자기부담사업비 (30% 이상) : 현금 10% 이상 + 현물 20% 이하

*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

< **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** (정부지원사업비 7,000만원인 경우) >

| 총 사업비 (예시) | 정부지원사업비 |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| 현금 | 현물 |
| 100% | 총사업비의 70% 이하 | 총사업비의 10% 이상 | 총사업비의 20% 이하 |
| 1억원 (100%) | 7,000만원 (70%) | 1,000만원 (10%) | 2,000만원 (20%) |

< **사업화 자금 비목** >

| 비 목 | 비목 정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재료비 | •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|
| 외주용역비 | •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|
| 기계장치 (공구기구, 비품, SW 등) | 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|
|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| 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 |
| 인건비 | •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(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) *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|
| 지급 수수료 | 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임차비,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) |
| 여비 | •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|
| 교육훈련비 | •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|
| 광고선전비 | •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|

| 창업 프로그램 | <p>• (창업프로그램) ①시장진입, ②초기투자유치, ③실증·검증, ④자율 프로그램</p>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| 유형 | 프로그램 예시 | 지원내용 |
| | ① 시장 진입 | 판로개척 | 창업기업의 홍보, 마케팅 뿐 아니라 매출 증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활동 |
| | | 네트워킹 |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 |
| | | 민간연계 | 창업기업의 산업 또는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제반 활동 지원 |
| | | 글로벌연계 | 글로벌 전시회, 행사 관련 창업기업 수요에 따른 연계지원 |
| | ② 초기 투자 | 투자교육 |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교육 → 심화교육까지 쉼 과정 교육 |
| | | IR | 주관기관 VC, 엑셀러레이터,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모의투자 및 실제투자 IR 진행 |
| | ③ 실증 검증 | 멘토링 | 기술 또는 산업 전문가가 창업기업과 1:1 또는 1:N의 형태로 비정형적 상담 진행 |
| | | 기술실증 | 민간·공공기관과 매칭한 창업기업 기술성 검증 |
| ④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| | 주관기관이 초기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| |

4

신청 및 접수

□ 신청·접수 기간 : 24. 1. 30.(화) ~ 2. 22.(목), 16:00까지

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(“제출완료”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)
 - * 신청·접수는 **16:00 정각에 종료** (신규 신청 불가). 다만, 16:00 전에 1단계(약관동의)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, 18: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
- ② 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
-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,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 및 삭제 불가

□ 신청방법

○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 (www.k-startup.go.kr)

-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

*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
** **기업인증** :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

***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'[별첨5]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' 참고

< 유의 사항 >

- ①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,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
-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,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
 - *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,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(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)
 - **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'주관기관'과 시스템상 선택한 '주관기관'이 상이한 경우, 시스템상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평가 절차 진행
- ③ K-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,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.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에 실명(개명)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K-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

□ 제출서류

- 사업계획서 1부 ([별첨 1] 양식)

*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(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
-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(해당 시, [별첨 2]의 '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' 참고)

| 제출 서류 | 제출 방법 | 비 고 |
|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① 사업신청서 | 온라인 입력 | - |
| ② 사업계획서 | 파일 첨부 | 용량 제한 30MB |
| ③ 증빙서류 (필수증빙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 포함) *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| | |

* 가점 증빙서류는 **사업 신청 시 제출**,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(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)

5 평가 및 선정

- **평가 절차** : 총 2단계 평가 (서류 → 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

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**선택한 주관기관**에서 안내 예정

<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(안) >

| ① 요건검토 | ② 서류평가 | ③ 발표평가 | ④ 최종 선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|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(2배수 내외 선정) |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(30분 이내) |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|
| '24.3월 중 | '24.3월 말 | '24.4월 중 | '24.4월 말 |

신청기업의 요건검토, 사업계획서 유사·중복성 검토는
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
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·협약 취소 처리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·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 방법

- ① **요건검토**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- ② **서류평가** :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 (가점 포함)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(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)

-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'창업기업'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*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,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발표평가 또는 협약대상에서 제외

*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, 사업자등록증명, 폐업사실증명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**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**

<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>

| 구분 | 대상 기업 | 점수 | 비고(제출서류 등) |
|---------------|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점 (최대 3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1년* 이내 1억원(현금) 이상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 * 투자계약일이 최근 1년('23.1.30.~'24.1.29.) 이내 이고, 해당 투자금의 입금은 '24.2.22.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| 1점 | 투자계약서, 주주명부, 입금증 등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그린뉴딜 관련 분야 업종의 창업기업 * 그린뉴딜 분야 : 탄소배출 저감, 신재생에너지, 재활용 기술, 친환경·지식서비스 등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| 1점 |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확인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2년 이내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* 다수의 수상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최대 1점 인정 | 1점 |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.1월에 개최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* 단, 중소벤처기업부 K-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 수상 아이템, 수상기업,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| 1점 | 제출 불필요 (창업진흥원 확인) |
| 서류평가 면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2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'최우수' 판정기업 • '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'최우수' 판정기업 | | [별첨2] '증빙서류 제출목록' 안내 참고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3년 도전! K-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팀 * 수상아이템, 수상기업,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(서류평가 면제는 팀당 1회에 한하므로 반드시 팀원 간 협의를 통해 1명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)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졸업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* 민간기관 : KB금융그룹, KB국민카드, SK텔레콤, LG사이언스파크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합창업대학원 졸업자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자 * '22년 성균관대학교, 부산대학교, 한밭대학교 연합창업대학원 입학생 | | |
| | | | |

*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, **사업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**(미제출 시 불인정)

③ **발표평가** : 제품·서비스 개발 동기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(동 사업 신청자)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

* 평가시간 : 30분 이내 (발표 15~20분 이내 + 질의응답)

** 평가방법 :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

- 우선선정 대상 기업은 정부지원사업비 배정을 위해 발표평가에 참여하여야 함

< 우선선정 대상 >

| 구분 | 대상 기업 | 비고 (제출서류 등)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우선선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3년 도전! K-스타트업 왕중왕전 대상 수상팀 * 수상아이템, 수상기업,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| 제출 불필요 (창업진흥원 확인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.1월에 개최한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* 단, 중소벤처기업부 K-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 수상아이템, 수상기업,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3년 'D-DAY'(디캠프), '정주영 창업경진대회'(아산나눔재단) 입상자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| |

④ **최종선정** :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

-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, 정부지원사업비*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
- *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
-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- *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□ **평가지표**

- 창업 아이템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**종합적으로 평가**
- *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,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 서류·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>

| 평가항목 | 세부 내용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문제인식 | •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(문제인식), 해결방안(필요성) 등 |
| 실현가능성 | •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(개선)방법, 경쟁력 확보 방안 등 |
| 성장전략 | •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, 자금조달 방안 등 |
| 팀(기업) 구성 | •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(예정인)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|

□ 사업 운영일정

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

6

유의사항

◆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"형법", "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",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, "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"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"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" 제32조, "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"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 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

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'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(협약체결) 불가. 단, '24년 전('23년까지)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

*** (주의)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**

- 동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·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 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(3년)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
*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써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, 선정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*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,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
*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- 동 사업 신청자는 '24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자(신청자)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(통보일 기산, 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
-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자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」, 창업진흥원·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,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-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'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등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계좌) 개설 및 창업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- * 지정 은행(신한은행)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7

사업 신청 문의

- (시스템 문의) 국번 없이 1357
- (사업 문의) 주관기관 담당자

| No. | 권역 | 주관기관명 | | 선정규모(안) | 연락처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서울 | 씨엔티테크(주) | 민간 | 29개사 | 02-3152-8660 02-3152-0924 |
| 2 | | 서울과학기술대학교 | 대학 | 29개사 | 02-970-9048 02-970-9024 |
| 3 | | 고려대학교 | 대학 | 29개사 | 02-3290-4812 02-3290-4814 |
| 4 | |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| 민간 | 29개사 | 02-739-9162 02-749-9573 |
| 5 | 경인 | 인하대학교 | 대학 | 29개사 | 032-860-9371 032-860-7257 |
| 6 | | 수원대학교 | 대학 | 29개사 | 031-229-8524 031-229-8561 |
| 7 | | 가천대학교 | 대학 | 29개사 | 031-750-6964 031-750-6963 |
| 8 | | 단국대학교 | 대학 | 29개사 | 031-8005-2864 031-8005-2867 |
| 9 | 강원 충청 | 한국수자원공사 | 공공 | 29개사 | 042-629-5362 042-629-5363 |
| 10 | | 국립한밭대학교 | 대학 | 29개사 | 042-828-8665 042-828-8664 |
| 11 | | 가톨릭관동대학교 | 대학 | 29개사 | 033-649-7198 033-649-7349 |
| 12 | | 순천향대학교 | 대학 | 29개사 | 041-530-4835 041-530-4836 |
| 13 | 호남 | 국립순천대학교 | 대학 | 29개사 | 061-750-5433 061-750-5437 |
| 14 | |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| 민간 | 29개사 | 062-364-9157 062-364-9166 |
| 15 | 동남 |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| 민간 | 29개사 | 051-749-8969 051-749-8958 |
| 16 | | 영산대학교 | 대학 | 29개사 | 055-380-9103 055-380-9523 |
| 17 | | 동아대학교 | 대학 | 29개사 | 051-200-6452 051-200-6365 |
| 18 | 대경 | 경북대학교 | 대학 | 29개사 | 053-950-7657 053-950-7659 |
| 19 | |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| 민간 | 29개사 | 053-759-6397 053-359-3622 |
| 20 | 제주 |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| 대학 | 29개사 | 064-754-4411 064-754-4406 |

붙임 1

창업 여부 기준표

| 신청기업구분 | 상세 구분 | | 창업여부 |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------|
| 개인기업 | 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 | | 창업 기본요건 | |
| | 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 |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| 창업아님 | |
| | | 이종 | 창 업 | |
| |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| - | 창업아님 | |
| |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| 이종창업 | - | 창 업 |
| | | | 폐업 3년 초과 | 창 업 |
| | | 동종창업 | 폐업 3년 까지 | 창업아님 |
| 부도/파산 - 2년 초과 | | | 창 업 | |
|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| - | 창 업 | | |
| 법인기업 | 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 | | 창업 기본요건 | |
| |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| 이종창업 | - | 창 업 |
| | | | 폐업 3년 초과 | 창 업 |
| | | 동종창업 | 폐업 3년 까지 | 창업아님 |
| | | | 부도/파산 - 2년 초과 | 창 업 |
| | | | 부도/파산 - 2년 까지 | 창업아님 |
| | 동종전환 |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|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| |
| |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| 이종창업 | - | 창 업 |
| | | |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 | 창업아님 |
| | | 동종창업 |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| 창 업 |
| | 자회사 여부 | 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 | 창업아님 | |
| 과점주주 여부 |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 | 창업아님 | | |
| 회사형태 변경 | 동종유지 | | 창업아님 | |
| | 이종 | | 창 업 | |

- 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: kssc.kostat.go.kr
- 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
붙임 2**지원 제외 대상 업종**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| NO. | 대상 업종 | 코드번호 세세분류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| 일반유희주점업 | 56211 |
| 2 | 무도유희주점업 | 56212 |
| 3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 91249 |
| 4 | 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| - |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붙임 3**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사업 목록**

- 초기창업패키지 (실험실특화 포함)
- 창업도약패키지 *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
-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
-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
- 창업중심대학 (초기·도약기·실험실특화 포함)

붙임 4
2024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

| 연번 | 창업지원사업명 | 소관 부처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1 | ·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(TIPS창업사업화) | 중소벤처기업부 |
| 2 | · 예비창업패키지 | 중소벤처기업부 |
| 3 | · 초기창업패키지 | 중소벤처기업부 |
| 4 | · 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 | 중소벤처기업부 |
| 5 | · 아기유니콘 200 육성 | 중소벤처기업부 |
| 6 | · 재도전성공패키지 | 중소벤처기업부 |
| 7 | · 창업중심대학 | 중소벤처기업부 |
| 8 | ·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| 중소벤처기업부 |
| 9 | ·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 | 중소벤처기업부 |
| 10 | ·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 | 중소벤처기업부 |
| 11 | ·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(DATA-Stars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
| 12 | · 에코스타트업 지원 | 환경부 |
| 13 | ·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| 환경부 |
| 14 | · 물드림 사업화 지원 | 환경부 |
| 15 | · 예술기업 성장 지원 | 문화체육관광부 |
| 16 | ·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| 문화체육관광부 |
| 17 | · 스포츠산업 창업중기(엑셀러레이팅) 지원 | 문화체육관광부 |
| 18 | ·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| 문화체육관광부 |
| 19 | · 콘텐츠 초기창업 육성 지원 | 문화체육관광부 |
| 20 | · 콘텐츠 창업도약 프로그램 | 문화체육관광부 |
| 21 | ·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(콘텐츠 오픈이노베이션) | 문화체육관광부 |
| 22 | ·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| 문화체육관광부 |
| 23 | ·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| 문화체육관광부 |
| 24 | · 관광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| 문화체육관광부 |
| 25 | · 신사업창업사관학교 | 중소벤처기업부 |
| 26 | · 농식품 벤처 육성지원 | 농림축산식품부 |
| 27 | · 창업성공패키지(글로벌창업사관학교) | 중소벤처기업부 |
| 28 | ·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| 중소벤처기업부 |